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시문화산업 진흥 체계 마련〉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29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9
2. 조문별 검토	10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0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14
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15
라.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6조~제9조)	17
마.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21
바. 전시문화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12조)	24
사. 지적재산권의 보호(안 제13조)	2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시문화산업은 국민의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지식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며,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전시수요의 증가 및 전시문화 향유 욕구의 증대로 인한 상설·비상설 전시시설의 확대와 전시공간과 전시콘텐츠 연출기술의 발달로 전시문화산업은 창의적 문화산업으로서 독자적 산업영역으로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공공문화콘텐츠로 정의되었고 그에 따른 전시회 등의 문화상품도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전시 기획, 전시 연출, 제작 등 문화 시설의 전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따른 대가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전시문화산업과 현재 「전시산업발

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전시 산업은 서로 다름에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법 적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I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전시(展示)’는 특정한 장소에서 전시의 주최자 또는 기획자가 어떤 특정한 관심과 의미가 담긴 유형·무형의 그 무엇인 전시물을 관람하는 다수의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교육, 계몽, 홍보, 광고, 판매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산업경제적 기능이라 할 수 있음.¹⁾

전시와 관련된 산업은 경제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시산업발전법」은 ‘전시산업’을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²⁾하고 있음.

1) 문형욱·이영아, “전시의 역사적 발전과 전시학의 가능성(전시의 개념정의와 전시 유형 구분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2016.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당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당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부로 정의³⁾하고 있음.

즉, ‘전시문화산업’이란 ‘전시산업’과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지식기반의 콘텐츠를 스토리화하여 첨단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매체를 융복합하고 디자인하여 연출된 전시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창의적인 종합예술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전시문화산업은 전시산업 자체가 가지는 복합영역사업, 종합서비스사업의 면모를 바탕으로 예술, 교육, 문화유산, 산업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 전시 구현을 위한 기획, 디자인, 설계, 제작 등의 전시기법의 발전을 이루어내며 독자적 산업영역으로 발전을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이루어 오고 있음.

2024년 기준 전시문화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시문화산업 분야 매출액은 2조 1,617억원에 달하며 산업 종사자 수는 1만 1,206명이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 전시문화산업 동향(2022년~2024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1조 1,970억원	1조 9,297억원	2조 1,617억원
종사자 수	7,494명	9,632명	1만 1,026명

※ 자료 : 2024년 기준 전시문화산업통계조사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발전하고 있는 전시문화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 전시문화사업과 콘텐츠에 대한 육성체계, 기술개발, 전시문화사업자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특히, 문화산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사업들 중 상당수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전시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이 없는 상태로 인하여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4)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2024년 기준 전시문화산업통계조사」, 2026, p.30.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 관련 입법 현황 >

분야	관련 법률	위원회 회부 제정안
영화·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출판·인쇄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방송영상물, 디지털문화 콘텐츠 등	-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⁵⁾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
만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캐릭터	-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⁶⁾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패션산업 진흥법안」 ⁷⁾
공연	「공연법」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⁸⁾
미술품	「미술진흥법」	-
공예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전통 의상, 장식용품 등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2027. 4. 29. 시행 예정)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⁹⁾

이에 제정안은 전시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문화산업 분야와 같이 개별법률로 정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5)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5)

6)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7) 「패션산업 진흥법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0)

8)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

9)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4)

촉진, 국제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시문화의 질적 성장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전시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관광 산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 관련 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시산업발전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에 의해 이미 별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시문화산업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 디스플레이·조명 등은 타 문화산업인 공연·공예·디자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보호 실익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제정안은 산업통상부 소관 「전시산업발전법」과 상당 부분 유사·중복¹⁰⁾되므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제정안은 「전시산업발전법」과 목적, 정의, 주요 내용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중복되고, 제정안은 「전

10) 참고. 「전시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과 「전시산업발전법」 비교

시산업발전법」의 전시회·박람회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있으나 아트 페어·콘텐츠박람회 등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전시컨벤션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시산업은 산업통상 부에서, 국제회의(컨벤션)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중인 각 부처 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시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시산업발전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196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1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정의, 국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총칙 사항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전시문화사업자의 신고 등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번호	조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0조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제11조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12조	전시문화사업자의 신고
제13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부 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시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시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향유권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상설 및 기획 전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문화콘텐츠의 기획·설계·개발·제작·설치·생산·유통·소비·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와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2. “전시문화사업”이란 전시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3. “전시문화사업자”란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시공간”이란 기념관·전시관·체험관·전시회·박람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민의 전시문화 향유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문화콘텐츠”란 전시문화산업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전시공간에 제공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말한다.

안 제1조는 전시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시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핵심사항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여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안 제2조제1호 본문은 “전시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11)가 문화상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조제1호 단서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12)의 전시회·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는 ‘박람회’가 ‘전시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입법경제적으로 박람회의 자구를 삭제하고,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회와 관련된 산업”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조제5호는 “전시문화콘텐츠”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상품을 콘텐츠 이외에도 유형의 재화 및 관련된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1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당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전분상품박람회, 무역상당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있음.

콘텐츠의 정의¹³⁾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 재화 및 재화와 관련된 서비스 모두를 콘텐츠에 포함하는 것은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도 비록 “문화상품”에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나 “콘텐츠”를 별도로 정의¹⁴⁾하고 있음.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5호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과 관련된 콘텐츠”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2조제1호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은 전시문화산업의 정의에서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회·박람회와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회·박람회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어 혼란 가중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시 관련 산업 현황 >

분류코드	색인어	대분류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시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시산업발전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근거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안 제4조는 「전시산업발전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제정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전시산업발전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전시문화산업에 유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시문화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시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시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시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전시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는 전시문화산업에 대한 적극적 정책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계획에는 전시문화산업 진흥의 기

본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5조제2항제6호는 종합계획의 내용에 전시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별도의 조항이 없음.

일반적인 입법례¹⁵⁾는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경우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하기보다는 개별 조항에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하는 것보다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5)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6조~제9조)

제 정 안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2. 제7조에 따른 전시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 3. 제8조에 따른 전시문화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 제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양성 및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

제 정 안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전시공간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문인력 및 전시문화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문화산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및 전시문화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4. 그 밖에 전시문화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안 제6조는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시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재교육, 전시문화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를 통하여 전시문화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전시문화산업 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전시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시산업발전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모두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¹⁶⁾을 두고 현재

16) 「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에 따른 사업과 제정안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중복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등 (안 제10조 및 제11조)

제 정 안
제10조(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시문화산업의 발전과 전시문화콘텐츠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회사·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전시문화콘텐츠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시문화사업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전시공간연출 기술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전시공간연출 기술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시공간연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안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시콘텐츠 연출기술 등이 발달하고 있으나 다양한 콘텐츠의 종류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전시콘텐츠 대가 계산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대가 산출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공공발주 전시문화사업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이러한 점은 미술, 디자인 등 시각예술 분야에서 공통적인 상황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⁷⁾,

「미술진흥법」은 대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¹⁸⁾하고 있음.

1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미술진흥법」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④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 제11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및 회사·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유사 입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¹⁹⁾한 것을 감안하여 전시문화콘텐츠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유사하게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1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바. 전시문화사업자의 신고 등 (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전시문화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제4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는 전시문화사업의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자에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산업발전법」은 과거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규정²⁰⁾

20) 「전시산업발전법」(법률 제12613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전시시설사업자 등록 시 신고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함에

하고 있었으나, 전시사업자 등록제가 실효성이 낮은 점과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전시사업발전법」(법률 제13154호, 2015. 2. 3., 일부개정) 개정을 통하여 폐지한 바 있음.

비록, 전시문화사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²¹⁾에 따라 신고제로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3.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5.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전시시설사업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신고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10조(등록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전시문화사업자의 신고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된 입법연혁을 감안한다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고제도 도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사. 지적재산권의 보호 (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콘텐츠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시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전시문화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시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전시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이를 통하여 전시문화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작권법」 제4조²²⁾는 저작물의 예시로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을 들고 있어 전시문화콘텐츠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문화산업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²³⁾을 두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84

22)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3)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전시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전시산업발전법 비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시산업발전법
목적	○ 전시문화산업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로 전시문화향유권 증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정의	○ 전시문화산업 : 상설 및 기획 전시공간 기반의 전시문화콘텐츠 기획·설계·개발·제작·설치·생산·유통·소비·운영 등 관련 산업	○ 전시산업 : 전시시설 건립·운영, 전시회 및 부대행사 기획·개최·운영,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 제작·설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 및 관련된 공사 수행, 전시회 관련용역 제공 산업
	○ 전시문화사업 : 전시문화산업 관련 경제활동	
	○ 전시문화콘텐츠 : 전시공간에 제공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 전시공간 : 기념관·전시관·체험관·전시회·박람회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주요 내용	○ 종합계획수립 ○ 전담기관 지정 ○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 적정 용역대가 지급, 용역전문수행기관 육성 ○ 전시문화사업자 신고 ○ 지적재산권 보호	○ 발전계획 수립,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시장현황조사 ○ 전시시설 건립, 전문인력 양성, 정보유통촉진, 사이버전시회 기반구축 ○ 전시회의 국제화, 대형화, 전문화, 입찰 특례 ○ 전시산업 국제협력·표준화, 세제지원 및 사업지원 등